우정공무원교육원 공고 제2019-1호

2019년 제1회 우정공무원교육원 우정실무원(공무직) 채용 공고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음식조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우정실무원(공무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우정공무원교육원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채용인원	근무예정기관	담당업무내용
우정실무원 (공무직)	2명	우정공무원교육원 (천안시 동남구 소재)	- 음식조리 관련 업무 - 기타 부대업무

2. 근무 조건

○ 신분 : 공무직 근로자(비공무원)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보 수

- 기본급: 일급 66,800원
- 수당: 근속수당(1년이상 근로자), 명절수당(1년이상 근로자, 연2회), 유급휴일(주휴수당)
- 실적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퇴직금 지급(1년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 등

○ 근무시간: 주 5일 (평일 월~금)

- 1일 8시간 근무 (7:00~16:00 or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교육원 식당운영 환경변화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 될 수 있음

○ 휴 가: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등

3.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 최종시험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8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나. 응시자격 제한

ㅇ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 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ㅇ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가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 위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가. 조리업무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ㅇ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나. 식당조리 관련 업무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5. 시험 방법

시험단계 / 채용분야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우정실무원 (공무직)	**서류전형**	**면접시험**

가. 제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 · 부적격 여부만을 판단

ㅇ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심사 기준

심사항목 / 배점	자격요건 만족도	직무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충실·성실성	조리관련 자격증	취업지원 대상자 등
100점	40점	20점	30점	5점	5점

· 직무관련 경력 환산 점수 : 식당조리 관련 업무

직무관련 경력 환산	환산경력 채점 기준
식당조리 관련 업무	- 2년 이상 20점, - 1년 6월 이상 이상 15점 - 1년 이상 10점, - 6월 이상 5점

· 취업지원 대상자 등은 「4. 우대요건」 '다' 항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며, '조리관련 자격증' 과 '취업지원 대상자 등' 의 심사항목에 2이상의 자격이 있는 경우 각각 1개의 자격만 반영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6. 응시서류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2019.5.10.(금)~5.16.(목), 09:00~18:00

※ 단,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함

나. 접수처: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채용담당자 (☎ 041-560-5132)

다. 지정된 접수처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단,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자는 반드시 접수 유무를 확인)

※ 접수주소 : (우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우정실무원 응시원서 재중 』 표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의 서식은 채용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 접수된 응시표는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당일 배부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모집공고 : 2019.5.9.(목)~5.16.(목)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9.5.10.(금)~5.16.(목)

다. 서류전형 : 2019.5.22.(수)

라.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9.5.23.(목) 우정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게시

마. 면접시험 : 2019.5.29.(수),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한 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19.5.31.(금), 우정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게시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사용】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 서식 사용】

다. 조리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발급)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각 증명은 해당자에 한함)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사용】

※ 각 서류는 공고일(2019.5.9.) 이후 발급 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일 3일전까지 우정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정공무원교육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ㅇ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방문신청(우정공무원교육원), 팩스(0505-005-1063)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parkil0915@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ㅇ 우정공무원교육원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9.09.12.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라. 우정실무원(공무직)은 비공무원이며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정년은 60세까지로 하며,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수습 중의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되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같을 경우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바.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 041-560-5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